

2000년 새시대 사료산업의 정책과 방향

김 주 수 국장

농림부 축산국

연 사 약 력

- 1982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1992 미 위스콘신메디슨대학원 졸업
- 1975 행정고시 제18회 합격
- 1977 ~ 1983 총무처 사무관
- 1983 ~ 1988 농림부 종합기획과·농촌소득과·공보관실 사무관
- 1988 ~ 1988 농림부 농업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 1988 ~ 1990 국무총리실 파견
- 1990 ~ 1990 농림부 농어촌복지담당관(과장)
- 1992 ~ 1996 농림부 회계과·시장과·기획예산담당관·식량정책과 과장
- 1996 ~ 1996 농림부 공보관(국장)
- 1996 ~ 1998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국장)
- 1998 ~ 1999 국방대학원 파견
- 1999 ~ 1999 농림부 유통정책국장
- 1999 ~ 현재 농림부 축산국장

2000년 새시대 사료산업의 정책과 방향

김 주 수 / 농림부 축산국장

I. 사료산업의 현황

1. 사료산업의 발전과정

□ 유치단계(1960년대)

- 원료의 원시적 단순가공단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사료공장 출범시기
- 사료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 마련
 - '61년도를 기점으로 사료수급계획 수립제도 실시
 - 배합사료 원료 조달을 위한 정부관리양곡 부산물 취급요강 제정
 - 미 잉여농산물 공여계획(PL480 Program)에 따라 사료용 곡물 수입
 - 사료관리법령·사료검사업무 취급요령 및 배합사료 공정규격 제정

□ 고도성장단계(1970~1980년대 중반)

- 국가경제의 급성장과 정부의 꾸준한 축산진흥시책에 의한 사료산업의 양적성장 시대
 - 배합사료 생산량 : ('70) 508 → ('75) 901 → ('80) 3,462 → ('85) 6,457천톤

-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축산물 수요증가로 국내 사료산업의 발전이 가속화 되었음
- 근대적 사료제조시설을 갖추게 되고 단미·보조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감
- 사료곡물수입의 급증으로 사료공장은 인천·부산 등 임해지역으로 집중
 - 대도시화에 따른 지가·노임의 상승, 공해발생, 판매수송의 원거리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 대두

□ 안정성장단계(1980년대말~현재)

- 사료산업의 양적성장으로 사료의 과잉공급과 사료곡물의 해외의존도 심화
 - 사료곡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곡물의 다양화시책과 수입선의 다변화 시책 전개
-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사료산업의 양적성장 추세가 둔화
- 관세 및 부가세의 감면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요구
- 사료원료의 공동구매에서 벗어나 점차 개별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선물거래 등에 참여하는 기업 증가
- 사료의 가공형태가 과거의 가루사료 중심에서 펠렛, 후레이크 사료로 바뀌고 포장형태도 점차 산물(벌크) 형태로 전환
- 사료산업의 저율성장에 따라 판매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물류비용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남은 음식물 사료화 등 부존자원 및 폐자원 활용을 위한 노력 경주
-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료의 품질관리 중요성 대두
- 농가 자가 배합사료 및 섬유질 가공사료 이용 증가

2. 사료 유통현황

가. 배합사료 산업관련 주요지표

	'80	'85	'90	'95	'98	'99
○ 생산량(천톤)	3,462	6,467	10,529	14,856	14,259	14,991
(지수)	(100)	(187)	(304)	(429)	(412)	(433)
- 사료곡물 도입량	2,008	3,749	5,480	8,370	8,066	8,338
○ 가격 (원/25kg)	4,353	4,528	4,729	5,441	7,115	6,567
(지수)	(100)	(104)	(109)	(125)	(163)	(151)
○ 가축사육두수(천두)						
- 한 육 우	1,361	2,553	1,622	2,594	2,383	1,952
- 젖 소	180	390	504	553	539	535
- 돼 지	1,784	2,853	4,528	6,461	7,544	7,864
- 닭 (천수)	40,130	51,081	74,463	85,800	85,847	94,587

나. 사료 생산

□ 사료제조업체 현황

- 1962년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 유축농업 장려시책이 마련되고 사료용 옥수수 도입이 시작되면서 민간 사료공장이 설립되기 시작
- 사료제조업의 인허가 변천
 - 배합사료 : ('63. 8) 등록제 → ('74) 허가제 → ('95) 등록제
 - 단미사료 등 판매사료 : ('74)등록제[보조사료의 경우 ('81)허가제→('95)등록제]

배 합 사 료 공 장 현 황

구 분	공장수(개소)	연산능력(천톤)	'99생산실적(천톤)	가동율(%)
농 협	22	2,196	4,211	191.2
사료협회	65	6,530	10,154	155.5
기 타	8	258	491	190.3
계	96	8,984	14,856	165.4

※ 2000. 2월말기준이며 농협은 회원조합의 공장수 포함된 것임.

단 미 사 료 공 장 현 황

구 분	공장수(개소)	연산능력(천톤)	'99생산실적(천톤)
섬유질가공·발효사료	106	659	252
어 분	35	120	40
어즙흡착(혈분)	14	64	18
육분(수지박·유지)	57	279	179
육골분	9	27	22
우모분(가금도축부산물)	16	36	16
인산칼슘(석회석)	20	551	485
광물질	16	27	8
기타사료	98	2,633	104
계	365	4,396	1,124

※ 2000. 3월말기준

보 조 사 료 공 장 현 황

구 분	공장수(개소)	연산능력(천톤)	'99생산(톤)
향미제	10	15	1,425
요소제	3	32	3,127
규산염제	8	70	7,736
완충제	4	7	12,622
결착제	7	11	1,527
추출제	28	58	875
올리고당류	5	3	83
항응고제	13	11	531
기타사료	9	17	390
계	87	224	28,316

※ 2000. 3월말기준

□ 배합사료 생산 동향

- 배합사료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98년도에는 IMF 사태이후 가축사육두 수 감소 등으로 유사 이래 처음으로 배합사료 총 생산량이 감소함
- 축종별 사료점유비 추이는 양계용사료의 점유비는 감소한 반면 돼지, 비육용 사료의 점유비는 증가 현상을 보임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동향

(단위 : 천톤, %)

	합계	양계	양돈	낙농	비육	기타
'90	10,518 (100)	3,274 (31.1)	3,551 (33.8)	1,790 (17.0)	1,667 (15.9)	236 (2.2)
'95	14,856	3,766	4,725	2,095	3,680	589
'96	15,933	3,849	4,994	2,168	4,136	784
'97	16,000	3,763	5,062	2,087	4,366	722
'98	14,259	3,423	4,918	1,833	3,606	479
'99	14,991 (100)	3,845 (25.6)	4,872 (32.5)	1,916 (12.8)	3,739 (25.0)	618 (4.1)

□ 연도별 단미·보조사료 사용현황

- '90년도에 비해 '99년은 곡류 사용비율이 증가되었으나 강피류, 식물성 박류, 동물성 단백질류 사용비율 감소

연도별 단미·보조사료 사용점유비율

(단위 : 천톤, %)

	곡물	강피류	식물성 박류	동물성 단백질	기타	계
'90	5,634 (53.9)	1,860 (17.8)	1,974 (18.9)	148 (1.4)	831 (8.0)	10,447
'95	8,510 (53.9)	1,595 (10.8)	3,133 (21.3)	139 (0.9)	1,351 (9.2)	14,727
'96	9,169 (58.0)	1,639 (12.4)	3,346 (21.2)	140 (0.9)	1,526 (9.6)	15,821
'97	9,170 (57.7)	1,679 (10.6)	3,353 (21.2)	158 (1.0)	1,525 (9.6)	15,885
'98	8,204 (57.8)	1,383 (9.8)	3,085 (21.7)	134 (0.9)	1,382 (9.8)	14,182
'99	8,549 (57.3)	1,551 (10.4)	2,079 (13.9)	135 (0.9)	1,511 (10.1)	14,907

- 동물성 단백질 원료 및 기타 사료는 국산이용량이 많았으나 배합사료 주원료인 곡류 등은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였음

단 미·보 조 사 료 사 용 현 황

(단위 : 천톤)

년 도	구 분	곡 류	강 피 류	동 물 성 단 백 질	식 물 성 단 백 질	무 기 물	기 타	계
'90	국산	154	892	123	863	459	271	2,762
	수입	5,480	969	24	1,111	1	100	7,685
	계	5,634	1,861	147	1,974	460	371	10,447
'95	국산	140	1,019	121	1,163	610	586	3,639
	수입	8,370	576	17	1,970	4	152	11,089
	계	8,510	1,595	138	3,133	614	738	14,728
'96	국산	130	1,039	125	1,124	657	693	3,768
	수입	9,039	600	15	2,223	7	169	12,053
	계	9,169	1,639	140	3,347	664	862	15,821
'97	국산	153	1,017	138	1,234	643	716	3,900
	수입	9,017	662	20	2,119	8	159	11,985
	계	9,170	1,679	158	3,353	651	875	15,885
'98	국산	139	923	119	987	581	546	3,293
	수입	8,066	460	15	2,098	9	247	10,895
	계	8,205	1,383	134	3,085	590	793	14,188
'99	국산	211	1,039	116	1,082	614	580	3,642
	수입	8,338	512	19	2,079	14	303	11,265
	계	8,549	1,551	135	3,161	628	883	14,907

다. 사료의 유통구조

- 배합사료 총유통량의 39%를 농·축협에서 취급하고 나머지 61%는 일반사료업체의 판매망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음.
- 배합사료 유통체계
 - 배합사료회사 → 양축농가
 - 배합사료회사 → 중간대리점 → 양축농가
 - 배합사료회사 → 농협중앙회 → 단위농협 → 양축농가

- 배합사료회사, 축협사료공장 → 단위농협 → 양축농가
- 배합사료회사 → 도매단계 → 소매단계 → 실수요자
 - ※ 특수사료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동물병원 등에서 판매
- 축협사료공장 → 사료공장 미소유 축협 → 양축농가
- 축협사료공장 → 축협조합원, 양축농가

○ 단미·보조사료 유통체계

- 단미·보조사료 → 양축농가
- 단미·보조사료 → 중간대리점 → 양축농가
- 단미·보조사료 → 배합사료공장
- 단미·보조사료 → 중간대리점 → 배합사료공장

라. 사료가격 체계

□ 배합사료가격 관리제도 변천

- '72. 8. 3 이전 : 시·도지사가 가격 조정
- '72. 8. 3 이후 :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한 가격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가격 조정
- '74. 10. 4 : 자유가격판매제 실시
- '76. 1. 1 :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하여 가격 조정
- '77. 8. 12 :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하여 품목별 최고가격 지정
- '80. 7. 1 : 배합사료가격 자율화

□ 자율화 이후의 배합사료 가격체계 형태

-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83. 3부터 공동구매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동 구매가격이 사료가격의 기준으로 작용
 - 총 생산량의 20%를 구매함으로써 거래가격 형성을 주도

- 국제 사료곡물 가격 및 환율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인 농협과 사료업체간에 협의하여 구매계약가격을 조정
 - 축협등 동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이를 참고하여 판매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

〈 농협 공동구매제도의 장·단점 〉

- 대량구매로 인한 가격교섭력 강화로 저가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 가격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II. 사료산업의 당면과제

□ 축산물의 수입개방과 국내축산업의 위축으로 사료수요 감퇴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료산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위기감 고조

- 양축농가는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료가격의 인상반대 또는 인하 요구
- 사료수요감퇴로 배합사료 생산량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
 - ※ 일본의 경우에도 육류 수입이 자유화 된 '92~'93년의 26백만톤을 고점으로 점차 배합사료 생산량이 감소
 - 일본 배합사료 생산량 : ('93)26,136 → ('94)25,256 → ('95)24,866 → ('99)24,392천톤

□ 연도별 가동율 현황

- 양축용 배합사료의 생산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가동율은 '96년 최고점을 도달한 이후 감소함
- '90년이후 단미·보조사료의 생산능력은 제조업등록대상 사료의 범위확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톤, %)

구분	단 미 사 료			보 조 사 료			배 합 사 료		
	연산능력	생산실적	가동율	연산능력	생산실적	가동율	연산능력	생산실적	가동율
'90	287	496	172.8	127	5	3.9	7,056	10,518	147.8
'95	2,768	709	25.6	112	27	24.1	8,214	14,856	178.9
'96	2,978	809	27.2	130	32	24.6	8,441	15,933	187.0
'97	3,154	934	29.6	155	33	21.3	8,937	16,000	177.3
'98	3,387	921	27.2	158	28	17.7	8,992	14,259	157.4
'99	4,395	1,124	25.6	183	28	15.3	8,984	14,991	166.9

□ 사료자원의 해외의존도 심화로 수급 및 가격불안정 우려

- 국내부존자원 빈약으로 수입의존도('99년도 기준)는 평균 76%이나 수입곡물 가공 부산물(소맥피) 및 채유가공부산물(대두박) 사용분까지 감안할 경우 국내산 자급도는 4% 내외임.

	곡 류	강피류	식물성 부산물	동물성 단백질	기 타	계
국 산 (천톤) (%)	211 (2.5)	1,039 (67.0)	1,082 (34.2)	116 (85.9)	1,194 (79.0)	3,642 (24.0)
수 입 (천톤) (%)	8,338 (97.5)	512 (33.0)	2,079 (65.8)	19 (14.1)	317 (21.0)	11,265 (76.0)

□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사료생산비 부담 가중

- 취급물량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으로 물류비 부담율이 높음
- 원료 저장시설 및 운송관련 기간산업이 취약하여 체선료, 보관료 등의 부담이 과중
 - 사료원료 전용부두, 하역시설, 저장시설의 미비로 체화될뿐 아니라 비산먼지 발생으로 집단민원 제기

□ 사료가격 관리체계의 미정착으로 거래질서 문란

- 배합사료의 경우 가격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농협의 공동구매 가격이 기준이 되어 거래가격이 형성
- 복잡다기한 할인가격 체계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야기되고 가격에 대한 불신 초래

□ 사료비 부담 과중으로 양축농가의 경영 악화

- 축산물의 수입개방, 국내 축산물가격의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 초래
 - 축산농가 경영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80%

(단위 : 천원, %)

	송아지 (두당)	비육우 (10kg당)	우 유 (100kg당)	자 돈 (두당)	비육돈 (10kg당)	계 란 (10개)	육 계 (10kg)
경영비(A)	750	33	31	43	15	7	10
사료비(B)	604 (80.5)	15 (45.5)	23 (74.2)	23 (53.5)	8 (53.3)	4 (57.1)	6 (60)

Ⅲ. 사료산업 정책

1. 사료생산원가 절감 지원

□ 수입사료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88년부터 운용)

-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사료원료의 수급불안 방지와 축산업 및 사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수수, 소맥, 사료용 근채류 등 주요 수입사료에 대하여 할당관세 운용
- 국제 곡물가격 및 수입물량 등을 감안, 6개월마다 세율 및 한계수량 결정

※ 연도별 과세경감액 추정

(’94) 119 → (’95) 273 → (’96) 450 → (’97) 450 → (’98) 500 → (’99) 326억원

□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 공제(’77. 7부터 시행)

- 사료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로 사료가격의 안정에 기여
-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이 5/105에서 3/103로 하향조정 되었으나, 시행시기를 연장 조치함으로써 사료업체 부담 경감

□ 배합사료원료 구입자금 지원(’96년부터)

- WTO 출범이후 사료산업 및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곡물가격 불안에 따른 사료가격의 안정을 위해 원료구매자금 지원
 - 배합사료 원료구입자금 : (’96) 500억원 → (’97) 600억원 → (’98) 600억원 → (’99) 480억원 → (’00) 384억원

□ 사료용 어류 수매자금 지원(’81년부터)

- 어분 제조업체의 사료용 어류수매자금 지원으로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과 농어민 소득 증대 기여하기 위해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8%, 1년 용자 일시상환, 2회전 또는 3회전기준.
 - 사료용 어류 수매자금 : (’81) 57억원 → (’90) 90억원 → (’99) 18억원 → (’00) 20억원

□ 미국 GSM-102자금 지원

- 미국 GSM-102 자금 지원으로 L/C개설 사료원료 공급을 원활히 하여 배합사료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
 - (’98) 284백만불 → (’99) 220백만불 → (’00) 100백만불

2. 농가 부담 경감 지원

□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95. 10부터 적용)

-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등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관계법령을 개정, 양축농가 및 축산관련 법인 등이 사용하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감면액(추정) : 약 4,500억원 수준

□ 섬유질 가공사료 제조시설 설치 지원('93년부터 지원)

-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등 생산자단체와 전업농, 섬유질 가공사료 제조업체 등에 섬유질 가공사료 제조시설 설치비를 지원
 -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분리 급여에 따른 양축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반추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사료비 부담 경감
- 연도별 지원금액
 - '93~2000년중 47개소에 13,413백만원 지원
 - ※ 지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 농가 자가용 배합사료 제조용 시설 및 장비 지원('98년도부터 지원)

- 농산부산물, 음식물찌꺼기 및 식품부산물 등 부존자원과 폐자원을 유희노동력을 최대로 이용하여 사료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혼합기·분쇄기 등 장비와 제조시설 지원
- 연도별 지원실적
 - ('98) 4개소, 6,089백만원 → ('99) 92개소, 8,257백만원 → ('00) 52개소, 4,457백만원

□ 농가 자가 배합사료의 원료 공급

- 배합사료 제조업체에만 공급하던 옥수수 등 양허관세·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농

가의 자가 배합용(섬유질 사료제조 원료용 포함) 사료원료로도 공급 가능하도록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 개정('98. 2)

- 옥수수·보리·밀·호밀 등은 타 용도로 전용방지를 위하여 어분·석회석 등 섞어서 공급

3.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

□ 사료검정기관 변경

- 국립농산물검사소를 공시료 검정기관으로 지정
 - 기존의 2차 공시료 검정기관인 축산기술연구소는 사료연구기능에 전념하게 하고 1차 공시료 검정기관인 농협중앙회 사료검사소는 농협중앙회 및 지역축협 자체사료의 품질관리 담당

□ 동물약품으로만 취급되던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분류('99. 1. 19)

- 기존에 동물용의약품으로만 취급하던 사료첨가제중에서 항생제·항균제를 제외한 것을 사료로 분류하여 경쟁축진을 통한 사료첨가제 가격 인하 유도
 - 사료로 분류된 첨가제 : 비타민제·아미노산제·항곰팡이제·항산화제·생균제·효소제·미량광물질
- ※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99. 4. 19일부터 동 물질은 수입·제조할 수 있으며 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는 2001년 1월 1일 부터 수입·제조 판매 가능

□ 사료의 공정규격 대폭 개정('99. 4. 13)

-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항생물질·항균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 제조할 때에는 약품의 오·남용이나 교차오염으로 약품이 잔류되지 않도록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 및 관리토록 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연간 자체 품질검사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배합사

료의 아미노산과, 원료용미량광물질, 단미·보조사료의 보증성분은 연간 2회이상 실시하고, 배합기의 배합정밀도를 검사하도록 함

- 미량첨가사료별로 함량·순도 등 성분규격과 보존방법 및 사용기준을 미량첨가사료공정서에서 정함
- 미량첨가사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미량첨가사료에 대하여 사용량을 제한하고,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미량첨가사료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사료로서의 안전성 및 가치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사료원료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원료로서의 사용금지할 물질을 정하고, 사료별 수분 함량의 기준을 정함

□ 수입사료 신고제도 운용(2000. 2. 1)

-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모분, 인산칼슘, 미량광물질 등 146개 품목의 수입사료에 대하여 수입신고제도 운용
 - 배합사료 원료인 경우 농협중앙회와 한국사료협회 신고
 - 단미·보조사료 제조용 및 판매용은 한국단미사료협회 신고
- 미량광물질(11개품목)은 관세청장 요건 확인 품목으로 지정하여 통관전에 수입신고

IV. 사료산업의 합리화 추진방안

1. 단미·보조사료의 안정적 공급

□ 사료자급을 향상 및 친환경산업으로 유도

- 남은 음식물 사료화 등 국내부존자원 및 폐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추진
- 단미·보조사료를 친환경 사료산업 및 벤처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유도

□ 해외사료자원의 수입선 다변화 및 다양화

- 사료원료 수출국의 적극적인 발굴 : 품목당 3개국 이상
- 곡물 원료보다는 기타 사료자원 개발에 중점
- 수출국의 생산자단체, 곡물 메이저 등 국내 사료 공급상사를 통하여 새로운 품목 개발

□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확대

- 공동구매 확대 : 30% → 곡류 70%, 기타 50%
- 사료관련단체간의 공동구매 추진

□ 사료원료에 대한 저율관세 적용

- 기본관세율 개편이전에는 할당관세 및 양허관세제도 지속적 운용
 - 국내 사료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품목 위주

□ 수입사료 곡물의 선물거래 활성화

- 선물시장 이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국제곡물가격 분석기능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선물거래 추진
- 곡물 유통마진 및 국제해상운임 시장분석기능 강화

2. 물류비용 절감

□ 사료곡물 전용부두 확보 추진

- 기존 항만의 부두 일부를 사료원료 전용부두로 운영
 - 인천, 울산, 군산, 목포항에 대하여 사료원료 취급부두를 지정
- 아산항의 정부 부두를 사료원료 하역가능 추진
- 중·장기적으로 사료원료 전용부두 건설 추진
 - 아산항외에 군장항, 보령신항, 목포신외항 건설 추진

□ 기타 수입 단미·보조사료 저장시설(평사일로) 건설

- 소맥피, 사료용 근채류 등 기타 단미·보조사료 수입시 수입되는 항구에 창고형 사일로 및 하역설비를 건설하여 체선료, 보관료 등 물류비를 절감하고, 비산먼지 발생 방지, 사료 품질향상을 도모
 - 전량을 부두야적에 의존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사회적 물의 야기

3.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사료관리법 전면 개정

□ 사료안전관리인 의무 배치 도입

- 사료중에서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료를 제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인 의무 배치
 - 중금속 함유개연성이 많은 미량광물질을 제조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임
-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관련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또는 사료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실시토록 함

□ 사료업체에도 우수 제조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제도 도입

- 사료의 원료부터 제품 유통까지의 전과정에서 유해물질 등이 혼입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제조관리(GMP)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를 도입
 - GMP 제도와 HACCP 제도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GMP와 HACCP 제도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운영
- 동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2003년에 완료할 계획임
 - 동 제도의 기준은 2004년 마련토록 하고, 적용업체는 대규모 사료제조 업체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임

□ 제조·판매금지 등의 사료 확대

- 동물용의약품 등이 기준이상 잔류한 사료를 제조·판매금지 사료에 포함
 -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이 사료내 기준이상 잔류시에는 지도 기준으로 운영하여 왔음
- 또한 성분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료도 제조·판매 금지에 포함

□ 사료의 안전성 관련 특정성분에 대한 첨가량 및 함유량 제한

- 기준이상이 포함될 경우 동물 또는 인체에 건강 또는 생산에 저해되는 물질의 발굴 및 함유량 조정
 -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염산불용물질,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착색제 등 물질은 사료의 공정규격에서 사료내 함유량을 제한하고 있음

□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과 관련있는 물질에 대한 함유량 제한

-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광물질 등의 함유량 제한
 - 구리 및 아연의 사료내 허용 함유량은 사료의 공정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음